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1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9. 11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위원 구성수를 “30명 이내”로 수정하고, 매 회의마다 소집해야하는 위원의 상한 및 하한 규정을 삭제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명 이상 25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
- 제86조의2제6항 중 “자문위원회의 회의”를 “자문위원회”로, “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”를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로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명 이상 25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같  
은 조 제6항 중 “자문위원회의 회의”를 “자문위원회”로, “매 회의마다 지정하  
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
는”를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로 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6조의2(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,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.

1.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·결정 사항
3. 정비사업 분야 법령, 조례의 제·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민의 권리·의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주택정책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되며, 위

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
  2.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
  3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도시계획기술사,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
  4.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
 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.
-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⑦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2.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3.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

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
경우

- ⑧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 
를 준용한다.
- ⑨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.
-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  
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86조의2(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, 계 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 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 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 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(이 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 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·결 정 사항</u></li> <li><u>3. 정비사업 분야 법령, 조례의 제·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시민의 권리·의무 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</u></p>

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주택정책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되며,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
2.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
3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도시계획기술사,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
4.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.

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



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 
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 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 
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  
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
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  
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 
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⑦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 
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  
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 
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 
인정하는 경우

2.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 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 
· 주민등록번호· 직위 및 주  
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 
있는 정보

3.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 
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 
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 
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 
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 
우

⑧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⑨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.

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